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이 개정(법률 제20540호, 2024. 12. 3. 공포, 2025. 6. 4. 시행)됨에 따라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4. 16. ~ 4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제6조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.

②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.

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전담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의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30일
신청기관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 (대표자)	생년월일	
	소재지	전화번호	

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위산업 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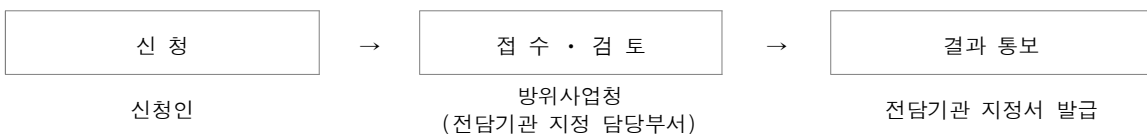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방위사업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」 제21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

제 호

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2. 대 표 자:
3. 소 재 지:
4. 사업자등록번호:

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제16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방위사업청장 직인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5조(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.</u> <u>②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.</u>
<u>제5조</u> (생략)	<u>제6조</u> (현행 5조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전력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613